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8
------	-----

제출년월일 : 92. 6.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개정이유

부산직할시사하구실·과직제규칙 제3조 실·과 분장사무의 조정에 따라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업무이관 사항 개정

2. 개정내용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제7조 2항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을 “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3. 관계법규

부산직할시사하구실·과직제규칙 제3조(분장사무표)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제 2 항중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을 “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7 조(실무위원회간사) ① (생략) ② <u>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u>	제 7 조(실무위원회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u>